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
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5. 7. 14.
행정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5년 6월 23일
- 나. 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- 다. 회부일자 : 2015년 6월 23일 회부
- 라. 상정일자 : 제189회 영등포구의회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위원회
(2015. 7. 7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재정국장 서종석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개정의 후속조치로 「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」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변경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쉽게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의 회계관직명 변경(안 제2조제2항)
- 변경된 법명 정정(안 제2조제2항제4호)
- 위원의 위촉 해제 요건에 실제 임무수행 가능 여부로 해제 요건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개선 (안 제10조제1호)

-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 (안 제1조, 제2조제1항, 제4조제1항제4호, 제6조제1항, 제4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김기영)

-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『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』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, 『지방재정법』 및 『건설기술 진흥법』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 하려는 것임.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 - 안 제1조 ‘목적’ 규정은 자치법규의 입법 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한 것으로써 ‘약칭’을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 상위법령인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법 시행령을 각각 “법” 과 “영”으로,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」를 “위원회”로 ‘약칭’ 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, 다음에 오는 본문 조문인 안 제2조제1항, 안 제4조제1항제4호, 안 제6조제1항에서 ‘약칭’을 사용하려는 것으로 적절하게 조례를 정비한 것으로 사료됨.
 - 안 제2조 제2항은 2014.5.28.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회계 관계 공무원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담당 공무원의 명칭을 기존 ‘경리관’에서 ‘재무관’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며,
 - 안 제2조제2항제4호는 2013.5.22. 「건설기술관리법」이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으로 법명이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임.
- 향후에도 집행부에서는 조례가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법령정비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,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제때에 조례에 반영하여 법령 간에 상호 모순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가 요구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70 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5. 6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재정법」 개정의 후속조치로 「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」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반영 및 변경된 법을 바로잡고 알기쉬운 용어를 정비하여,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」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의 회계관직명 변경(안 제2조 제2항)
- 나. 변경된 법명 정정(안 제2조제2항제4호)
- 다. 위원의 위촉해제 요건에 실제 임무수행 가능여부로 해제요건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당조항을 개선 (안 제10조제1호)
- 라. 알기쉬운 용어 정비 (안 제1조, 제2조제1항, 제4조제1항제4호, 제6조 제1항, 제4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제2항,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, 제60조제2항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사항

(1) 규제심사 : 대상사무 없음

(2) 부패영향평가 : 평가실시(의견반영)

- 제10조(위원의 위촉 해제)위원의 위촉해제 요건이 장기치료 및 6월 이상의 해외여행으로 명시되어 있어, 실직 임무수행 가능여부로 해제 요건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당조항을 개선 권고

(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실시(의견 없음)

라. 기타사항

(1) 입법예고(2015. 5. 21 ~ 6. 10, 20일간) 결과 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법률”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2조제3항”을 “법률” 제32조제3항”으로, “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”을 “시행령”으로, “계약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”를 “계약심의위원회의”로, “법 제16조제2항, 제4항 및 영 제59조, 제60조제2항”을 “『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』 제16조제2항 및 제4항,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위원회”를 “계약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경리관”을 “재무관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『건설기술관리법』”를 “『건설기술 진흥법』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4호 중 “법 제31조”를 “『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』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1조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영 제107조”를 “『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 제107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”를 “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분야의”로, “사람을”을 “사람으로 위원장이”로 한다.

제10조제1호 중 “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”를 “그 밖의 사유로 임무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『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』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0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<u>계약심의위원회</u>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제2항, 제4항 및 영 제59조, 제60조제2항에 따른 주민 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 및 주민 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계약심의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 <u>경리관</u>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위촉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『건설기술관리법』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『국가기술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<u>법률</u>』 제3 2조제3항----- -----<u>시행령</u>----- -----<u>계</u> <u>약심의위원회</u>의----- ----- 『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』 제16조제2항 및 제4항,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제2항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계약심의위원회 구성) ① <u>계약</u> <u>심의위원회</u>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- ----- ----- ② ----- -----<u>재무관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『건설기술 <u>진흥법</u>』----- -----</p>

자격법』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

5. 6. (생략)

제4조(기능) ① 위원회는 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및 10억원 이상인 물품·용역 등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 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.

1. ~ 3. (생략)

4.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

5. 6. (생략)

②, ③ (생략)

제6조(소위원회)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07조에 따라 공사, 용역, 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, ③ (생략)

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

5. 6. (현행과 같음)

제4조(기능) ① -----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『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』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1조--

5. 6. (현행과 같음)

②, ③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소위원회) ① -----

----- 『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 제107조-----.

②,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 계약심의위원

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 전문성
을 갖춘 사람을 선임한다.

⑤ ~ ⑦ (생략)

제10조(위원의 위촉 해제) 구청장은
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
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
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
병이나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
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

2. ~ 4. (생략)

회의 위원 중 해당 분야의-----
사람으로 위원장이-----.

⑤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위원의 위촉 해제) -----

-----.

1.-----

---그 밖의 사유로 임무-----

2. ~ 4. (현행과 같음)